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3468호
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

1.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

연번	등록번호	등록일자	상 호 대 표 자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영업소 소재지
1	203744	22. 12. 23.	주식회사 제이디케이에이티 (JDKAT Co., Ltd.) 정대규 110111-6610764	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, 에이동 511호(문정동,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)

2. 근거법령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(공사업의 등록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공사업등록의 신청 등)

3. 내용문의 :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)2133-2880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3469호
**도시관리계획【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】 결정(안)
재열람공고**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,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11.24., 수정가결)를 완료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911호로 주민 의견청취(2018.04.12.~ 2018.04.26.)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

본 ‘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9일

서울특별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①	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반포동, 서초동 일대	-	증)1,071,081.0	1,071,081.0	-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4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5.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6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7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